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파트너든든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7조 【상품유형】

- ① 이 예금은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2종류가 있다.
- ② 「금리연동형」은 회전주기에 따라 「1개월 연동형」, 「3개월 연동형」, 「6개월 연동형」 3종류가 있다.

제8조 【회전주기】

- ① 이 예금에서 ‘회전주기’는 금리연동형을 선택하는 경우 가입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동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말한다.
- ② 이 예금의 회전주기는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며, 신규 가입 시 선택한 회전주기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또는 매 회전주기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4%p 적용한다.
 1.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인 경우 연 0.2%p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해당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해당 시 연 0.1%p
 4.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연, %p)

| 우대이율 제공조건 | | 우대이율 |
|-----------|---|------|
| 우편우대 | 우편 계약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우대 ※ 우체국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 적용 | 0.2 |
| 거래우대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우대 (개인 1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법인·단체 1,000만원 이상) | 0.1 |
| |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대 (개인·단체 2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60만원 이상 / 법인 200만원 이상) | 0.1 |
| 고객우대 | 신규 가입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우대 | 0.1 |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적용

- ④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제10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은 매 회전주기일 현재 회전주기별 기본 이율에 회전주기 동안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매 회전주기 마다 적용한다.
- ② 이 예금 「금리확정형」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 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③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우편 우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 가입자가 우편 계약 고객(우체국소포, EMS,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인 경우
 - ※ 우편 계약고객 우대이율은 우체국창구에서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하며 신규 가입일의 전영업일 18시 현재 유효한 계약이어야 함

2.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균잔액 실적 우대」는 실적확인 기간* 동안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실적(개인 1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실적확인 기간
 - (금리연동형) 매 회전주기일의 전전월 말 기준 해당월 1개월 평균잔액
 - (금리확정형) 신규 가입일의 다음월 1일부터 만기일의 전전월 말일까지의 평균잔액
 -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잔 실적 적용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우대」는 실적확인 기간* 동안 체크카드 이용 실적(개인, 단체 2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60만원 이상 / 법인 2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실적확인 기간
 - (금리연동형) 매 회전주기일의 전전월 말 기준 해당월 1개월 이용실적
 - (금리확정형) 신규 가입일의 다음월 1일부터 만기일의 전전월 말일까지의 월평균 이용실적
 - ※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 ※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통합 산정
4. 「고객 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제11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2조 【이자지급방식】

- ① 「금리연동형」의 이자지급방식은 회전주기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금리확정형」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1. 「금리연동형」회전주기지급식의 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회전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단리로 셈하여 지급한다.
 2. 「금리연동형」만기일시지급식의 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회전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복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3. 「금리확정형」만기일시지급식의 이자는 단리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한 신규 가입 시」회전주기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 지급이 가능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단, 회전주기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며,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한 신규 가입 시」 회전주기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 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3조 【부가서비스】

- ① 이 예금은 가입기간 동안 가입 고객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인감)분실 재발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이 예금의 우대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제14조 【중도해지】

- ① 「금리연동형」의 경우 회전주기 경과 전에 중도 해지할 때는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② 「금리연동형」의 경우 회전주기 경과 후에 중도 해지할 때는 경과된 회전주기에 대해서는 약정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회전주기일 현재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③ 「금리확정형」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6조 【분할해지】

- ①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이 예금의 신규 가입일 현재 중도해지 적용 방식을 적용한다.

제17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8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